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5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3. 31.
4. 회부일자 : 2021. 4. 6.

II.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2021.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불일치 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민간위원 확대 : 7명 → 9명 (전체위원 11명 → 13명) (안 제2조)
 - 현재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총 13명(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중 불일치 부분 일부 조문에 반영하여 개정

-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을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종전 위원회 관할 대상에 포함된 정부윤리위원회 관할을 제외하고 “공무원 및”을 “4급 이하 공무원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직무대행 사유를 “사고가 있을 때에는”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 위원회 고발자 근거 법령에 의거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변경(안 제6조제2항제4호)
-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신설(안 제6조제5항 신설)
- 위원의 제척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와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현행 제6조제3항 삭제, 안 제6조제4항,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 신설)

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하지 않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 약칭 사용(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간결하게 정비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 [별첨 1]
- 입법예고(2021. 2. 15. ~ 3. 8.)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조례안 [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조례안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조례안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조례안 [별첨 6]
- 관계법규 : 조례안 [별첨 7]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351호로 제출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와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실효성 있는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시행 2021.6.2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형식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애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문(안 제2조,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6조의3)
-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1) 민간위원 확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행 7명의 민간위원을 9명으

1)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2/3가 되도록 하여 재산 심사, 취업심사, 업무취급심사의 직권 재심사 등 2/3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 민간위원을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 법령상의 윤리위원회 구성관련 연혁

- ('81년 법 제정 시) 별도 규정 없었음
 - ※ 시행령에서 정부윤리위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총무처장관, 5명의 정부위원, 2명의 민간위원으로 규정
- ('93년)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민간위원으로 선임
 - ※ 시군구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3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
- ('11년 ~ 현행)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
 - ※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위원 확대를 통한 심사기능 강화 배경

○ 다음으로 안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7호에²⁾ 따라 현행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인바, 조례 개정애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된 시기가 2006년 12월 28일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조

2)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례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상당히 지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조례안 제6조제5항은 심사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³⁾

이는 심사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로 회의 비공개를 명시한 사례가 없고 상위법령에서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바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조례로서 비공개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과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도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5조(회의의 비공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시·도교육청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규정 현황]

교육청	조례상 공개 여부
강원도	규정 없음
경기도	규정 없음
경상남도	규정 없음
경상북도	규정 없음
광주광역시	규정 없음
대구광역시	비공개
대전광역시	규정 없음
부산광역시	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개정 중
세종특별자치시	규정 없음
울산광역시	규정 없음
인천광역시	규정 없음
전라남도	규정 없음
전라북도	비공개
제주특별자치도	규정 없음
충청남도	규정 없음
충청북도	비공개

○ 다음으로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차용한 것이고, 안 제6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을 차용한 것인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4)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형식을 정비한 조문(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8조, 제9조)

○ 그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18)’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띄어쓰기, 축약어의 배치, 일본식 표현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형식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삭제
-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